

차별에
저항하라
4.20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정책요구안 자료집

2004년 4월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정책요구안 자료집

- ▶ 총론
- ▶ 420 공동기획단 13대 요구안
- ▶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제정 요구안
- ▶ 장애인 기초생활권 요구안
- ▶ 장애여성의 권리 확보 요구안
- ▶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 요구안
- ▶ 장애인 문화권 확보 요구안
- ▶ 비장애인권 헌관 확보 요구안
- ▶ 장애인 편의시설 요구안
- ▶ 장애인 체육활동 보장 요구안

2004년 4월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 총론	3
▶ 420공동기획단 13대 요구안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안	8
- 장애인 노동권 확보 요구안	10
- 장애인 이동권 확보 요구안	13
- 장애인 교육권 확보 요구안	17
- 장애인 연금법 제정 요구안	19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요구안	22
- 장애인 기초생활권 요구안	24
- 장애여성의 권리 확보 요구안	26
-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 요구안	28
- 장애인 문화권 확보 요구안	30
- 미신고시설 인권확보 요구안	32
- 장애인 편의시설 요구안	35
- 장애인 체육활동 보장 요구안	37
▶ 지역 요구안	
- 충북 지역	40
- 경남 지역	42
- 부산 지역	44
- 광주 지역	40
▶ 특별 요구안	
- 김도현 동지 석방 요구안	49
▶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소개	50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점점 더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정치·사회·문화 등의 제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들은 우리 민중들의 삶을 점점 더 황폐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우리 장애민중들은 이동·교육·노동·경제·정보·문화 등 모든 사회 영역과 일상에서 심각한 소외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부패한 보수수구의 권력자들은 피폐한 민중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만의 게임을 즐기며 권력쟁탈에만 몰두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비리국회라 이야기되고 있는 16대 국회에서는 부패수구세력들이 야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박으로 1년을 갓 넘긴 대통령을 탄핵시켜 버렸다.

또 한편 참여정부라 자칭하는 노무현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라크 파병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비준안 통과, 부안 핵폐기장 건설 문제 등의 중요 현안에 있어 그 보수적 본성을 수구세력과 연합하여 유감없이 발휘하며 민중의 삶을 유린하여 왔다. 그 결과 이 땅의 민중들은 더욱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약자이고 차별받는 장애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 선포한다.

80년대 초 정치적 혼란을 틈타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부독재는 광주민중항쟁과 삼청교육대 등 피비린내 나는 공포정치 속에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심신장애인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의 전신)’을 던져주고,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장애인당사자들에게는 극복 이데올로기를, 비장애인들에게는 시혜와 동정의 시각을 고착화시켜왔다.

장애는 장애당사자에게 요구되는 ‘극복’이란 이름의 개인책임이 아니며,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국가와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정부의 보호아래 체육관에서 동원된 장애인들이 점심 한 끼 얻어먹는 날, 언론매체를 통해 비장애인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최루성 극복사례를 발표하는 날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아왔던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회영역의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기 위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임을 선포하며 투쟁할 것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의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은 2002년, 2003년을 거쳐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은 각 부문별 요구안을 가지고 각각의 공간에서 전개해왔던 투쟁들을 총화하고 연대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해방

을 위한 투쟁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장애인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리고, 그것을 실현시키도록 요구해왔다.

그리고 2004년, 우리는 그간의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에서 다져온 강고한 연대의 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더욱 조직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각각의 요구들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장애문제는 어느 한 시기,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삶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억압과 차별의 문제인 만큼 각 장애 영역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 또한 장애문제는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그 책임은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투쟁을 전개해왔던 각각의 요구들은 그러한 장애인의 삶 전반에서 발생하는 요구들이고,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420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의 정책요구안들은 아래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이동권·교육권 확보, 장애연금법 제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장애인 정보접근권·문화권 보장, 미신고시설 문제 해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생활체육 보장 등의 요구안과 ▲김도현동지 석방을 요구하는 특별요구안, ▲충북, 광주, 대구, 경남, 부산 등의 지역요구안을 포함한다.

1. 독립적인 장애인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권, 징벌적손해배상의 도입을 전제로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를 입는 순간부터 사회로부터 많은 차별을 당하며 살아간다. 이에 미국의 ADA(미국장애인법)처럼, 많은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로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모든 것들에 대해 금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과 효과적 권리구제 기구 등의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히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고 각종 차별의 철폐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1.60%, 민간기업은 1.16%에 그쳐, 법적 기준인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2%의 의무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 중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할 것과, 이를 어길 시 민간기업과 동일한 고용부담금을 징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확대를 위해, 기업의 부담금 수준의 일반 회계예산 출연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장애인고용정책의 대표적 차별 제도인 공공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해 모든 직종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취업유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그나마 취업된 장애인들조차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며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도까지 전국의 시, 도 단위에 장애인의 각종 노동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애인노동상담소를 15개 이상 만들고, 노동관계법 상에 장애인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추가 또는 개정해야 한다.

3.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의 경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 장애인자가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 특별교통수단 종류의 다양화를 위한 개발 지원 등과 관련된 정책도 마련해, 장애인의 이동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4. 도로, 교통, 건축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편의증진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철저하게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 대중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와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에 대한 연구, 지자체 및 시설주에 대한 지원, 기술 개발, 편의시설 운동에 대한 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장애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영유아 교육에서 초·중·고 및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과정에서 차별 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해 모든 장애인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야 하며, 분리주의 교육차별 구조를 '평등한 통합교육체계'로 재구축해야 한다. 또한 전체 교육 예산 중 겨우 2%에 해당하는 장애인 교육 예산을 6%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 장애인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각 지역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해 장애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6. 현재 노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법상의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이외에는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혜와 동정의 차원이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장애연금법을 제정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노동불가능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고 복지수혜의 선택권을 보장해 장애인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자립생활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인 지역별 활동보조인 제도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립 지원, 전동휠체어 무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제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8. 지난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장애인 가구의 특성, 즉 장애인 가구의 추가 생계

비 지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어, 많은 장애인들이 수급자 선정과 생계급여액 지급 수준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에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가구유형별 최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6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만큼 인상하고,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또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며,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9.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고통 받는 장애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전문 쉼터 마련을 통해 장애여성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에 본인의 현실을 더 강화하고, 개인별 신분 등록제 실시, 장애인 코디네이터 제도화를 통해 장애여성에게 다양한 가족 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활동보조 제도화, 경제적인 지원, 이동권 보장을 통해 장애여성의 독립생활에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100인이상 기업체의 장애인의무 고용율을 5%로 확대하고 장애여성에게 50%를 할당해야 하며, 장애여성의 교육권 보장과 장애여성화장실 설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10. 정보접근에서 배제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의사소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기기 보급 확대 및 정보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방송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보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하며, 수화통역사, 점자 서비스, 의사소통보조 등을 통해 시청각 및 언어장애인 등의 의사소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11. 장애인은 전반적인 빈곤과 이동 및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그러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옥구 및 실태조사, 장애관련 문화시설의 전문화, 체계화 등 중장기 장애인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며, 공공문화시설 개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고, '(가칭)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12. 미신고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의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개방,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IL센터, 또는 소규모 그룹홈을 활성화하는 등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3. 장애인의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체육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

다. 재가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이 전국에 단 7곳으로, 이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문화를 즐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체육 시설은 전국에 단 두 곳으로, 그것도 한 곳은 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으로만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 선수단은 훈련할 장소가 없어 대회에 나가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전국 광역시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각 1곳씩 건립하며, 시,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에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 선수단에게 장애인 전문 체육 시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충북 등의 지역에서도 각종 조례제정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요구안을 가지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기획단의 이름을 걸고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 외에 특별요구안으로 이동권연대 지하철 선로점거 투쟁에 동참했다가 구속되어 실형을 언도받은 김도현 동지의 석방을 요구한다. 경찰과 검찰은 송내역장애인추락참사로 인해 분노한 장애인들에 의해 진행된 선로점거 투쟁에서 그 주체인 장애인당사자는 내버려두고 비장애인인 김도현 동지를 구속하고 '장애인을 이용해 다른 주장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심문으로 장애인주체를 철저히 대상화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활동가를 분리시키려 하였고, 끝내는 징역 8개월이라는 실형에 처하고 말았다. 반면 한진구 등 중증장애인 9명이 서울시를 피고로 제출한 장애인이동권침해에 관한 손배소송은 사법부에서 기각되었다. 장애인의 열악한 이동의 문제는 권리침해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한 김도현 동지를 구속한 사법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이에 김도현 동지에 대한 실형선고를 취하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은 이제 또다시 서로 어깨를 걸고 하나의 깃발 아래 장애인당사자에게 가장 절박한 요구인 위의 정책요구안과 특별요구안, 지역별 요구안을 가지고 장애해방의 선봉투사였던 최옥란열사의 기일인 3월 26일부터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26일간 치열하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의 동등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 몸에 쇠사슬을 묶고 투쟁하여야 하는 그들에게 과연 이동권, 생존권, 교육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그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생명을 건 투쟁을 하여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도 정당하게 권리 행사를 하고 싶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의 동등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 몸에 쇠사슬을 묶고 투쟁하여야 하는 그들에게 과연 이동권, 생존권, 교육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그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생명을 건 투쟁을 하여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도 정당하게 권리 행사를 하고 싶다.

장애 발생 원인을 보면 선천적인 원인보다 후천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을 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극도로 폭력적이고, 비장애인의 속도에 맞추어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모순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 즉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이 장애인 개인이 감수해야만 하는 것인가?

장애인은 성별도 없고, 나이도 없다. 이것이 비장애인과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으로 장애인은 집에서도 성이 무시된 존재,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고 있고, 종교에서도 장애인은 동성과 시혜적인 존재로만 비추어 질뿐이다.

왜 장애인의 교육율이 낮은 것인가?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큰 이유지만,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교육하면, 특수교육?재활교육?직업교육이 전부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통합교육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려진다.

왜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은 것인가? 장애인이 취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역시, 이동이 큰 문제이지만, 장애인이라면 생산율이 낮고,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벌 등이 낮다는 사회전반적인 시각이 문제가 된다. 생산율이 낮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평가의 기준은 사회의 속도이며, 비장애인의 속도이다.

장애인에게 사회의 속도?비장애인의 속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의 억압이 교육의 억압을 놓고, 교육의 억압이 취업(노동)의 억압을 놓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이 동정과 시혜의 대상자가 아닌 당당한 권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보다 신속하고 정당하게 구제를 받기 위해서, 차별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다음의 내용을 담고자 한다.

1. 독립적인 장애인권위원회 설치하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장애인의 전반적인 차별사를 관찰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장애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장애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며, 아울러 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시 및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차별은 현재진행형이다. 이것을 민?형사상으로 해결하라는 것을 그 기간동안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감내하라는 것이다. 독자적인 장애인권위원회 만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금지시킬 수 있다.

2.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라!

장애인권위원회가 장애로 인한 차별이라고 인정하였을 경우에, 그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 하여금 강제력 있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차별 시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해자들에게 아무런 강제력조차 행사할 수 없다면, 차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차별 받은 장애인에게 그 차별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재수단을 마련하라!

악의적이고 반복되는 장애 차별에 대하여 온갖 평계를 대면서 차별 시정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가해져야 한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차별하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징벌적 의미에서 손해배상액을 높이고, 처벌조항을 두어서라도 강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4. 장애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라!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조차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을 경우,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 그 모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어느 누가 장애로 인한 차별이었다고 시인하겠는가. 이러한 차별사실을 차별을 받은 피해자가 전부 입증토록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피해자가 아닌 바로 차별을 자행한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노동권 확보 요구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확대·강화하라!

장애인의 실업률은 공식통계만으로도 28.4%에 이르고 있다(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이는 전체 실업률의 7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정부의 공식통계에 제외된 장애인 등을 추정할 때 전체 장애인의 실업률은 7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1> 장애인 노동자의 경제활동 실태

(단위 : 명, %)

총계	계	15세 이상(생산가능 연령)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소계	취업자	실업자	
1,449,468	1,331,489	636,657 (100.0) (100.0)	455,730 (71.5) (34.2)	130,461 (28.4) (17.7)	694,832 (51.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0

그러나 2001년 현재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1.60%,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은 1.16%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무고용 대상업체를 2004년 200인, 2006년 100인, 2007년 50인까지 확대 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의 반발로 실현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 또한 유예시켜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며, 2% 의무고용을 이를 때까지 5% 이상의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민간 기업과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라!

▶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사업체는 2007년까지 5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적용하며, 이를 어기는 모든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라!

2.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확대하라!

최근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을 이유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대폭 축소하는 정부안을 고시한 바 있다(2003년 12월 29일 노동부장관 고시). 그동안 장애인 고용의 유인책으로 인정되어온 장려금 제도가 축소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은 장애인 고용을 더 회피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대부분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기업체의 부담금에 의해 조성되고 있으며, 이를 집행하는 노동부 산하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이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이전 시행안대로 중증여성장애인은 최저임금의 175%, 중증남성장애인은 150%, 경증 여성장애인은 125%, 경증남성장애인 100% 등으로 차등 지급하라!

▶ 현재 대부분 기업체의 부담금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부담금 수준의 기금을 일반 회계예산에서 출연하고, 기업체에서 거두어들인 부담금은 전액 장애인고용장려금, 다수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체의 무상지원금 등 장애인의 직접적인 고용을 촉진하는 데에 지출하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비 등은 일반회계예산으로 충당하라!

3.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하라!

2002년 현재 업종별 적용제외율은 공공부문(정부 및 지방자치단체포함) 75%, 공기업 및 민간 기업체 22%에 이르고 있다(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애인 고용정책, 황수경·박찬임, 2002). 이는 '장애인은 특정 직종에 일할 수 없다'는 편견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없는 직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엄연한 차별이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밝히는 1.6%의 장애인고용은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해결하지 않고는 허구적인 수치일 뿐이다. 100명의 공무원 중 75명을 제외한 25명의 1.6%일 뿐인 것이다.

장애인은 과학기술의 발달, 이동권의 확보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다양한 직종의 업무수행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더욱 업무수행 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인이 자신의 직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취업불가 직종을 지정해놓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따라서 이전 시대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에 의해 과도하게 제약되고 있는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해 특정 직종의 취업 유무는 장애인당사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해야한다. 특히 장애인고용에 앞장서야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민간기업의 두배 이상의 직종에 장애인의 취업을 제약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공공부문에서 모든 업종의 적용제외율을 폐지해야 한다.

4. 장애인노동자의 각종 차별을 철폐하라!

장애인노동자들은 대부분 농어업이나 단순노무직으로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비장애인노동자보다 주당 근무일수, 1일 평균근로시간 등에서 장시간 노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취업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139만 3천원의 47.5%(79만 2천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잣은 이직 등 고용 불안이 심각한 실정이다.(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3> 장애인노동자의 직종별 분포 (단위 : %)

구분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어업	기능직	단순노무직
1995년	9.4	17.9	31.4	18.2	23.0
2000년	11.1	21.0	25.6	11.7	29.9
전체(2001.3)	30.6	26.7	8.8	22.7	11.2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1996 ;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 통계청, 「2001년 고용동향」, 2001.3.

<표4> 장애인노동자의 임금 현황

취업자	취업기간 (개월)	주당근무일수 (일)	1일평균 근로시간	월평균임금 (천원)
장 애 인	181.3	5.79	9.49	792
- 전 체	70.8	5.5	8.48	1,39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또한 지난 2002년 통과되어 실시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구역에 지정된 곳의 기업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상황에 따라 의무고용제도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 장애인노동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육성해 각 장애영역별, 직종별로 다양화하고, 물리적 제약이 적은 첨단 직종에 취업을 유도하라!

▶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관련법의 부당한 조항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장애인노동자들을 위해 2006년까지 전국의 시, 도 단위에 각종 차별철폐를 해결하는 장애인노동상담소를 개설하라!

▶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 규정, 산재법의 선천성에 의한 산재불인정 규정, 노동관계법 상의 장애인노동자와 비장애인노동자의 분리조항 등을 없애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을 적극 보장하며, 아울러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등에 대해 정부 입찰시 기산점을 제공하고, 의무고용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품 발주를 금지하는 등의 강제 조치를 강화하라!

▶ 현재 시행중인 경제자유구역은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 등 전체 노동자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는 악법이므로 경제특구 제도를 철폐하라!

4 2 0

장애인 이동권 확보 요구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이동보장법률을 제정하라!

현재 장애인의 이동 보장 정책은 서울이라는 대도시 위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에 의거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이동권연대를 비롯한 수많은 진보적 시민, 사회, 장애인 단체들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2004년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하며, 10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는 등 몇 가지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광주, 대구, 부산 등 광역시는 물론이고 일반 중소도시의 장애인 이동 환경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교통버스 내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지하철 역사 내 승강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법적 강제 장치가 없어, 시설주 또는 사용자 측의 양심에 의거해 관련 이동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왔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삶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나, 현 편의증진법의 내용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현 편의증진법(1998)에 교통수단과 도로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아주 미흡하여 장애인등 이동약자의 이동권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역이나 버스터미널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버스, 철도, 선박 등 교통수단 그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도로 및 교통수단 관련 내용은 건설교통부 소관인데 편의증진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실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002년도 말부터,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동보장법률)"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후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전국 각 지역의 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이동보장법률법추진공대위(이하 '공대위')를 결성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동보장법률"제정을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 및 국회를 통해 계속 촉구해 왔다.

이동보장법률은 지난해 하반기 국회의원 발의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려 했으나 의원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이동보장법률의 핵심 내용(국민시정청구권, 시정명령 등)을 모두 빼 버린 상태로 법안을 수정해 상임위에 제출하려 했고, 이에 공대위는 의원입법안을 철회했다.

또한 이동보장법률은 전체 대중 교통 환경 개선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할 부처를 건설교통부로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건설교통부가 공대위 측이 제안한 법률안을 받아들여, 정부차원에서 입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측은 이동보장법률은 지금 현재 입법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5년 정도의 법안 수정 기간을 거친 후 입안하겠다고 입장표명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 이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동보장법률을 정부 차원에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 장애인 등의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동보장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이동권에 대한 명시이다. 이동보장법률에는 이동권의 정의와 이동권이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수단의 종류의 확대이다. 대상 교통수단이 편의증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이외에도 특별교통수단에 이용되는 차량, 장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항공기, 선박, 택시, 고속철도 등 불특정 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기관을 관리, 감독하며, 예산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동정책위원회의 설치이다.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계획이나 정책만으로는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무총리 산하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민의 시정요구권이다.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이 이동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시정요구에 대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강력한 벌칙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동권 보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의 예산으로 이 법에서 지정한 의무를 강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2.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 지하철 역사 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사과하라!

발산역 장애인용 고정형 리프트 추락참사(2002년)에 대해 서울시는 그동안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다. 그동안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발산역 사고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 인정 및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2년여간 투쟁해 왔으나, 서울시는 재판부의 결정에만 따르겠다고 했을 뿐, 이 사고에 대해 개인적 사과 이상의 행동을 취하지 못해 왔다.

이에 2002년 10월 31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해 윤재봉씨의 아들 윤모씨의 이름으로 서울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03년 11월 6일, 서울지법 민사 제21부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원고에 88,7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산역 사고가 한 개인의 스쿠터 및 리프트 오작동에 의해 일어난 문제가 아닌, 리프트 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인권연대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 측에 발산역 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항소 중이므로, 이후 결과에 따르겠다고 공식적 입장은 전달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도 발산역 사고에 대해 구조적인 결함을 지적하고,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에 공개사과 및 유가족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의 1심 판결에서도 이를 부분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시 측에 발산역 사고에 대해 책임 인정 및 공개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뿐만 아니라, 발산역 사고 이후에 일어난 인천의 송내역, 수원의 세류역 장애인 추락 참사에 대해서도 철도청은 어떠한 책임 인정도 하지 않고, 이 사고들을 유가족과의 밀약으로만 해결하려 해 왔다.

특정한 사고에 대한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사과 및 제발 방지 약속은 당연한 행정 처리 절차임에도, 장애인의 문제라는 이유로 관련 기관은 장애인이 사망하고 부상당하는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처리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는 태도만 취해 왔다. 이에 대한 정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 인정 및 공개 사과는 다시는 지하철 역사 내 그러한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결단이다.

▶ 지하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4월까지 지하철 역사 내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승강편의시설을 모든 역사 내에 완벽하게 설치한다는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환승역 구간(동대문운동장역, 왕십리역, 종로3가역)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승강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은 서울시의 보도자료(2004년 2월 2일 서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의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지하철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모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 1월부터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제기한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단차(높이 및 넓이) 문제 해결에 대한 서울시 나름의 대책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미 편의증진법에서도 단차가 3cm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 지하철 역사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 10cm 이상의 단차로 인해 휠체어 또는 유모차의 앞바퀴가 빠져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하철 역사 내 단차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승강장과 지하철 철로의 개방형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추락사 및 자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신규 지하철 역사 시공에 스크린도어(Screen-door)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시범 운영 단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지하철 역사에 뉴욕의 지하철과 같은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라!

일반 대중교통버스보다 저상버스가 보편화될 경우,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은 물론이고, 탑승시간까지 대폭 줄여, 대중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2003년 9월부터 시범운행한 저상버스(59번, 12-5번 등 총 3대)에 대해 이용객들(330명)의 설문조사를 한 바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315명(96%)의 이용객들이 저상버스가 계단이 없어 승하차가 매우 쉽다고 밝혔다. 또한 저상버스 차량의 승차감, 내부 편의성, 차량 안전성, 승하차 과정에서의 안전성 등에 대해 저상버스 이용객들은 절반 이상의 만족도를 표현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그동안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수 천대에 달하고 있는 전체 노선버스 중, 단 500대만을 저상버스 또는 굴절버스로 전환할 것을 지난 2004년 2월 2일 보도자료에 발표한 바 있다. 심지어 장기적인 계획으로 2012년까지 전체 노선버스의 단 20% 만을 저상버스화하겠다고 으스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등은 저상버스를 의무화하고 있어, 대부분의 노선버스를 저상버스 또는 굴절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 측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보여주기식의 저상버스 도입 방안만 발표해 왔다.

따라서, 문전연결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대중교통버스를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편성해 지원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民間 버스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규제(예를 들어 여객운수교통사업법 등의 개정)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되어, 저상버스 제작 기간(4~5개월)이 너무 길고, 저상버스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저상버스와 버스 정류장의 접속 환경 개선, 도로의 요철 부분에 대한 정비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관련 정책 담당자 등이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저상버스 제작과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도로 교통 환경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인 전용 콜택시의 차량대수 및 운행시간을 확대하라!

장애인전용콜택시는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지난 2002년 밸산역 추락참사에 대해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투쟁의 성과물로 서울시가 내놓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3년도부터 장애인전용콜택시 100대를 도입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1,2급 중증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STS)의 형태로 집밖 활동을 혼자서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실질적 이동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 왔다.

현재 장애인전용콜택시는 20개반으로 편성해 5조 5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비록 100대를 도입해 운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시간대에 비춰 20대 정도가 동시간에 운행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 7만여 명의 대중교통 이용 욕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운행대수로 평가된다. 실제로 하루 1600회 이상의 장애인 이용객의 이용 요구가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중 400회 정도만 그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용 시간이 한정(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되어 있어, 새벽 또는 한밤 중에 중증장애인의 콜택시를 이용하려 해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계에 자립생활운동 이념이 확산되면서,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집밖 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있으나, 콜택시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집밖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를 비롯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을바른운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특별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예산부족 및 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대화조차도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전용콜택시 운전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전혀 보장해 주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들에게 사랑과 봉사로 일할 것을 주문하며, 최저생계 정도만 유지할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 혜택 등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복지 혜택을 전혀 제공해 주지 않아 왔다. 게다가 장애인전용콜택시 운영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장애인전용콜택시운전자들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법적으로 이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위장해 버렸다.

이에 대해 장애인전용콜택시 운전자들은 2003년 9월 노동조합을 결성해 장애인전용콜택시 운전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사용자 측인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단체협약 과정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시는 노동조합을 결성한 노동조합간부 6명 전원을 “신호위반, 과속 등 벌점 누적” 등 부당한 이유로 그해 12월 계약을 해지시켜버렸다.

장애인전용콜택시 운전자들이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은, 장애인전용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도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최적의 길임을 누구도 주지하는 바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운전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대해 계속 회피하며, 이들을 운전봉사자의 신분으로 전락시켜, 장애인 이용객들을 봉사의 대상자로 낙인하려고만 하고 있다.

4 2 0

장애인 교육권 확보 요구

[현황 및 문제점]

1. 특수교육 현황

구분	특수아동수 (출현율 2.71%)	특수교육(보육)아동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영유아(0~6)	10만명	2,638		
유치원		340	59	1,240(국립)
초등학교		20,558	1,521	
중학교		54,470	4,540	9,419(공립)
고등학교		1,487	913	13,617(사립)
계	32만명	26,925	3,269	24,276

*영유아는 2001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나머지는 특수교육원 자료(2002. 4. 현재)

2. 장애인교육 주요 문제점

- 2002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은 2.7%로서 취학연령 800만명중에서 22만명 정도로 추정되나, 특수교육중인 학생은 54,470명으로서 특수교육 수혜율이 24.8%에 불과(국립 특수교육원).하다. 이는 학령기 특수교육요구 아동의 75%(17만여명)가 입학기회에서 배제되거나 일반 교육현장에 방치된다는 것이다.
- 학령기 특수교육요구아동의 정규학교 취학률은 43.4%로서 학령기 장애인의 50% 이상이 정규학교 미취학 상태로 추정, 심각한 교육기회 차별이 존재한다.
- 0~6세 장애 영유아가 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진단, 조사, 특수보육, 조기 치료교육이 공공화 되지 않아 사적 시장에 내맡겨지고 있다. 취학 전 장애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은 저소득층 장애유아에 대한 치명적인 교육방기를 초래한다.
- 장기간 장애인교육 방기에 따라 전체 장애인 51.6%가 국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성인 장애인의 재교육 문제가 심각하며, 장애인 전생애에 걸친 행복추구의 좌절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 2003년 현재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은 2%에 불과하여 특수교육요구아동 출현율 2.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2003년부터 5년간 특수교육예산을 전체교육예산의 2%에서 3%로 확대하여 특수교육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나, 2003~2004년 예산확보에 이미 실패하고 있다.

[요구]

1. 전생애 장애인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교육법’을 제정하고, 분리주의 교육차별 구조를 ‘평등한 통합교육체계’로 재구축하라!

-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령을 개폐하여 교육기본법과 장애인교육법령에 통합, 정비하여 일반교육 체계 안에서 똑같이 장애인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학령기 장애학생에 국한한 협소한 특수교육 개념을 ‘전생애 장애인교육’으로 전환, 0세 장애영아부터 성인 장애인까지 전생애 장애인교육을 보장하도록 장애발견 및 진단, 특수보육, 치료교육, 학교교육, 직업교육, 성인

장애인 재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 0세부터 장애유아 조기발견 및 진단, 조기 치료교육, 초중등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장애영유아의 특수보육, 조기 치료교육, 유치원교육 등 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모든 교육의 무상 원칙을 규정해야 한다.
- ▶ 모든 보육기관 및 유치원에서 장애유아 통합을 의무화하고, 국공립 통합 보육 및 유치원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장애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차별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장애유아 보육, 유치원 단계에서의 통합은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장애아 전담보육기관 및 전담 유치원은 축소, 제한이 필요하다

2. 국공립 통합교육기관 확충 등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학교교육 기회 확대 등 장애인 교육의 질적 평등을 실현하라!

- ▶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국공립 통합교육기관 확충, 사립 특수교육기관 비중 축소 등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 ▶ 특수학교 등 전담 특수교육기관을 재구축함으로써 통합교육 내용을 확보하고 장애유형, 장애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따른 대안적 장애인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 ▶ 모든 학교에 장애인교육 전담 교원 배치, 장애학생 입급 학급당 1인 이상의 보조원 배치, 장애학생 입급 학급 학생수 축소, 모든 일반학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등 핵심적인 통합교육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 장애학생 통합 환경에서 다양한 치료교육, 사회 적응교육, 직업교육 등 교육예산을 확대하여 장애인교육의 대안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위탁교육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3. 장애인 교육행정체계를 통합·재구축하고, 지역 '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전생애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라!

- ▶ 장애인 교육운영 체계를 확고히 만들기 위해 정부내 장애인교육 관련 업무를 교육부내 전담부서로 통합하고, 지역 교육청에 장애인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교육지원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 연구개발, 연수교육을 맡고 있는 국립 특수교육원을 전생애 장애인교육에 대한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장애인교육원'으로 개편하고, 교육연수기능은 각급 교육청과 장애인교육지원센터로 환원시켜 교육현장에서의 실천을 강화해야 한다.

▶ 시도 교육위원회 선출에 장애인교육 부문 위원을 10% 할당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내에 장애인교육 관련 기구를 설치하도록 법제화 한다. 또한 지역 교육청 소재 시군구 교육자치체에는 '장애인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 교육운영을 책임지도록 한다. 위원회에는 지역 교육청 외에 당사자 및 지역사회(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의 운영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 지역 교육자치체에 '장애인교육지원센터' 설치를 법제화하여 0세 장애유아에서부터 성인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교육을 지원하도록 한다(교육지원, 보조원 운영, 치료교육·순회교육·직업교육 지원 등). 센터에는 장애학생 학교교육을 관리하는 지역 교육청 외에 협력지원 주체(장애인 진단 및 특수보육, 성인 장애인 교육 관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장애인의 대학입학을 다양화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을 의무화하고, 교육부의 대학평가 항목에 장애인교육지원 사항을 넣도록 해야 한다.

▶ 교육기회에서 배제된 성인장애인 재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육복지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야학 등 성인장애인 재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위탁교육을 육성해야 한다.

▶ 학령기를 놓쳐 교육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야학 및 공부방 등 성인장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또는 비인가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전생애에 걸쳐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평생교육법과 연계해,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마련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4 2 0

장애인연금법 제정 요구

[현황]

중증장애인의 경제권의 문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소요와 노동 불가능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형태라 할 수 있는 현행(200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전)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상의 수급권을 가진 1, 2급 중증장애인에 한정되어 지급되고 있다. 그 현황을 알아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필요대상 및 필요처	실제 수혜대상 및 수혜처
대상	전체 1, 2급 중증장애인	기초법 수급권을 가진 중증장애인
인원	42만 2천여 명(2003년 9월 현재)	10만 여 명(24% 정도)
항목	장애인로 인한 추가비용 (전체장애인 142만 명 대상)	장애인수당
액수	15만 8천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평균 5만원(도농간 차등지급)

표 5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필요와 실제 수혜현황

2003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수당의 수급대상을 기초법 수급권자인 전체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액수를 6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다음은 노동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감소다. 이는 다음 표를 보면 장애인의 노동소외에 따르는 소득감소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전체 상용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실업률	4%	28%(등록장애인에 한함)
평균소득	183만 7천원	79만 2천원(전체 상용노동자의 43%)

표 6 장애인 노동자의 실업률 및 평균소득(2000년 2/4분기 기준-한국통계월보 12월호)

장애인연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재원의 마련이다. 기존의 보수정치인들이 이를 회피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재원마련의 어려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 불이 넘어 경제력에서 전 세계 국가들의 20% 내의 부유한 국가에 속한다. 따라서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사회복지 즉, 부의 재분배에 무관심하다는 반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1년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약 47조 9952억 원으로 경상 GDP 대비 8.70%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성장위주의 기형적인 경제정책의 결과로, 현 정치권의 변명이 얼마나 궁색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은 '노동할 수 없다'는 편견 하에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인은 가족이나 사회에 기여할 수 없음으로 인해 그저 시혜와 동정차원에서 보호해야 하는 대상, 사회적 걸림돌인 것이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의존성과 자아상실감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문제제기]

현행 장애수당은 기초법에 한정된 빈곤문제 해결 차원이다. 다시 말해 중증장애인들은 소득이 전무하다고 해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를 보전해줄 사회적인 장치가 부재하다는 이야기다. 결국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전은 빈곤층으로 떨어질 때까지 재산 감소를 방지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장애인의 빈민화를 조장하고 경제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원래의 수당개념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인구통계학적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지급되는 급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재산과 소득수준을 고려하는 기초법이라는 것에 한정시켜 이를 지급함으로서 수당의 원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에 장애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빈민구제 차원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평등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의료비, 교통비 등에 있어 비장애인보다 추가로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노동환경조성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장애인, 특히나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실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보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 국민들은 아직 경제성장이 최우선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성장이고 무엇을 위한 경제인지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경제성장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성장이 아닌 분배를 더욱 중요시해야 하고, 경쟁에 의한 나오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경제적 권리도 이러한 인식 하에 당연한 권리의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1998)
직접세	92, 1	65, 3	54, 7	46, 0	39, 2	39
간접세	7, 9	34, 7	45, 3	54, 0	60, 8	41

표 7 [주요국가 직·간접세 비율] (1996, 국세기준)

위 표는 주요 선진국의 직간접세 비율이다. 간접세는 소비액에 비례하여 매기는 세금이므로 부의 정도에 관계 없이 동등한 비율로 부과되는 반면 직접세는 주로 재산세, 상속세 등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어느 정도의 부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 표를 보면 경제선진국일수록 직접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부의 재분배에 있어 직접세 증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연금을 통해 돈이 생기게 된다면, 가족이나 사회는 더 이상 그들을 보호대상이나 걸림돌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당사자는 연금으로 자신의 노동환경을 스스로 조성해 노동 가능성을 높일 것이고, 가족은 부양해야 할 물리적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사회는 새로운 소비시장의 창출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장애인연금법시행으로 산출될 수 있는 소비시장에 대한 것이다.

분류	내용	금액	비고
유료도우미	생활활동보조	1조 2천억	30만×3,000×5시간×25일
문화생활비	영화관람비 식비	6천억	월2회×2인×60만명= 2백6십억 월2회×2인×60만명= 2백5십억
시설투자비	경사로, 화장실	2천억	노인, 아동, 임산부등 모두 편함
지하철공사수입	지하철 이용비	3천6백억	동행인이용료, 장애인무료폐지 월24회×1,200×12개월×60만명
기타운송료	택시이용	7백20억	20000원×월2회×12개월 ×300,000명
총계		2조 3천억	

표 8 장애인연금법시행으로 산출될 수 있는 소비시장

[요구]

1. 빈곤문제해결 차원의 시혜와 동정이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라!

복지에서 인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여 '장애인=빈민'이라는 스티그마(낙인)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빈민화를 조장하는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한정된 장애인의 소득보전에 관한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노동불가능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전면 보전하라!

	장애인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노동소외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지급대상	전체 장애인 143만 명	비노동 중증장애인(기초법수급자 제외)
급여액	16만 원	35만 원
전체소요액	약 2조원	약 2조 3천억 원

표 5 장애인연금의 급여내용, 급여액 및 소요액

3.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현실화를 위한 재원 마련방안을 강구하라!

이를 위해 부유세 도입 등의 직접세 증액과 같은 전반적인 세제 개혁정책과 연계하여 일반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차원으로 전환하라!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욕구를 현실화하고, 복지수혜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그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요구

[현황]

IL(Independent Living)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IL이 그 이념이나 실제에 있어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한 현실에서 IL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IL의 현황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도록 한다.

먼저 기존 복지관 중심의 장애인복지라는 사회복지전문가의 일방적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와 분리 수용되거나,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애인복지의 혜택이 장애인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질적 양적인 부분보다는 중간 전달과정에서 인건비나 관리비로 새어나가는 부분이 더 많아, 이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둘째로 활동보조의 문제다. 장애인, 특히나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에 대한 충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며 그나마 가족에게 대부분의 부담이 지워지며, 도움에 대한 결정권이 장애인당사자가 아닌 자원활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 필요한 도움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도움필요정도	절대적으로 필요 : 20.4%		그 외 : 79.6%
도우미 존재 여부	있다 : 80.3%		없다 : 19.7%
도우미와의 관계	가족 : 93.8%	그 외 : 6.2%	

표 10 장애인의 도우미에 관한 실태(자료 참고 :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셋째. 전동휠체어는 중증장애인들이 기존의 수동휠체어에 의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던 이동에 대한 욕구를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해소하게 함으로써 자기결정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는 전반적인 저소득층인 장애인들에게 고가의 활동보조기기라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구입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주택의 문제다. 장애 종류 및 정도의 다양성만큼이나 그에 따른 환경 또한 다양하다. 그 중 장애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생활하는 주택공간도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조가 필요하다.

[문제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애인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반 조건에 대한 법제화 등이 될 것이다.

먼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 구조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전문가들에 대한 수동성,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삶을 책임지며,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활동보조의 경우, 아무리 편의시설이 완벽히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장애특성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IL에 있어서 활동보조인은 필수불가결한 것

이다. 또한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당사자 중심이 아닌, 부모와 가족의 케어, 도우미, 자원봉사로부터 시혜와 동정의 차원에서 보호와 봉사를 받기 때문에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동휠체어는 장애인들에게 편의용품이 아닌 필요용품이다. 따라서 이의 확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의 어떠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장애인들의 주택을 개개인의 장애특성에 맞게 개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도 장애라는 비선택적 요소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부담되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요구]

1. 유료활동보조인을 제도화하라!

장애인에 대한 인적 지원이 자원활동이나 가족의 일방적 도움이 아닌 계약관계를 통한 유료 활동보조인 차원으로 지원돼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료활동보조인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활용, 파견 등을 IL센터에서 관리하고, 유료활동보조인의 예산은 정부 예산으로 책정하여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한 활동보조인들에게는 4대보험 적용 등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그 권리 를 보장한다.

2. 지역별 IL센터 건립을 지원하라!

지역별로 자조적으로 생겨나는 IL센터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을 최소화하여 장애인당사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한편, 장애인들이 센터에서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상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노동자로 인정받아 지역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지원에 대한 근거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전달체계로서 IL센터를 제도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전동휠체어 무상지원 및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하라!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5년마다 무상지급하고, 이에 대한 개조나 수리, 추가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의료보험의 적용을 확대한다. 이는 전동휠체어가 활동보조기기로 의료용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기초생활권 요구

[현황 및 문제점]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차원의 생활보호를 탈피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최저생계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책임지겠다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선정 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는 최저생계비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구조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제도에 가장 많이 의존해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 기대와는 달리 장애인가구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수급자 선정, 급여 수준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는 보장구·의료비·간병비·특수교육비 등의 추가 지출로 인하여, 장애유형·등급별로 다양하나 평균적으로 월 157,900원의 추가 생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최저생계비용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하여 장애인가구는 수급자 선정과 생계급여액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소득평가액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에 장애가구의 추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득평가액에서도 장애가구의 추가 생계비 지출 비용이 공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행 산정방식은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 지출이 최저생계비에도, 소득평가액에도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또한 부가급여인 장애수당은 월 5만원으로 장애로 인한 평균 지출비용의 $\frac{1}{3}$ 수준이고, 이 또 한 1,2급 중증 장애인에게만 지급된다. 즉,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로 인하여 실질소득이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생계비 부담이 장애인 개인 혹은 가족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인 저소득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 체	발달 (자폐)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 애	계
총 추가비용	132.6	199.0	86.1	124.9	132.4	217.5	338.0	147.0	383.9	192.7	157.9
교통비	35.5	25.2	17.1	12.5	24.4	44.0	54.1	27.3	64.7	24.1	29.1
의료비	67.9	130.1	39.7	24.7	85.1	67.6	30.6	109.7	287.5	153.7	83.3
교육비	2.0	1.6	0.9	6.8	10.1	91.5	191.9	0.0	0.0	0.0	7.5
보호·간병인	5.8	27.4	4.0	1.3	11.0	0.7	17.8	1.0	26.5	6.5	9.6
보장구	15.3	7.8	12.2	64.7	1.2	0.7	0.8	0.0	4.8	1.2	15.6
구입·유지비											
기타	1.6	6.1	1.5	5.8	0.0	11.6	25.5	12.3	0.4	7.3	4.2

[요구]

1. 장애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증액하라!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장애인에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평균 15만 8천원이 더 소용 되므로 거기에 따른 최저생계비도 비장애인과 차등을 두어 책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가구, 노인가구, 모자가구 등은 가구특성에 맞는 최저 생계비를 책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2.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기초공제액을 인상하라!

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이동의 문제로 편의시설의 확보되어 있는 주거시설이 필요하므로 주택면적과 주거시설 비용이 일반 비장애인보다 많이 듈다. 그러므로 전월세 비용도 많이 든다. 현재의 기초보장제도의 재산기준으로는 주거지를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초법상의 재산 특례기준을 8천만원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3. 장애수당의 인상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 지원하라!

현재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부가 급여는 장애수당으로 수급자 중 1, 2 급 중증 장애인에게만 월 6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만큼 인상하고 대상자도 1, 2, 3, 4 급까지의 장애인에게 확대 되어야 한다.

4.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라!

장애인들은 대부분 근로로 인한 소득이 없어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에게 전과하여 결국 장애인이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스스로 자립하고 싶어하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하는데 부모나 형제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들은 집안에서 다양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는 예가 많다.

그러므로 많은 장애인들이 현재의 가정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싶어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어야만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5.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라!

대부분에 장애인들은 의료 의존도가 높다.

그러므로 의료비용도 비 장애인들보다 많이 지출된다.

하지만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어야만 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는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의료급여를 실시 하여야 한다.

6.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을 지원하라!

장애인은 7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취업률은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자활 사업은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노동 능력과 장애특성, 환경에 맞는 자활사업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여성의 권리 확보 요구

1. 장애여성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1-1. 장애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다.

장애인 폭력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법개정을 요구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진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사건해결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요구한다.

1-2 장애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쉼터를 확대 마련하라.

장애인 여성은 장애의 조건으로 인해서 폭력에 노출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더 어렵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위급센터만으로는 장애여성이 피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장애여성을 위한 장기적인 쉼터를 대거 마련하고, 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다양한 장애의 조건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2. 장애여성에게 다양한 가족 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

장애인 여성은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혈연가족 중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장애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요구한다.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에 본인의 현실을 더 강화하라.

현재의 기초법은 개인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혈연가족중심의 정책으로 장애인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부터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 개인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 실행해야 한다.

2-2. '개인별 신분 등록제'를 실시하라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을 논의 할 때 제시되는 제도는 당연히 신분상으로 개인과 가족을 분리해야 한다. 현재 장애여성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문화가 팽배한 이상 호주만 없어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점은 거의 없다. 어떤 의미에서 장애여성은 현재 호주제폐지로 기대되는 양성평등의 주체가 아니라 장애여성이기 때문이다.

2-3. 장애인 코디네이터를 제도화하라

현재 장애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팽배한 사회에서 장애아가 태어났을 때 성차별, 장애, 중도장애, 장애아를 임신하는 것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장애아를 임신한 산모나 중도장애여성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장애가 자신과 가족에게 공포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계획을 세우는 등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3. 장애여성의 독립생활에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3-1. 활동보조를 제도화하라.

활동보조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의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을 이루는데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힘써야 한다.

3-2 장애여성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도화하라.

기초법의 개선은 장애여성의 독립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가족 중심의 경제적 지원이 아닌 개인적인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여성이 주체로서 서기 위해 교육이나 취업에서의 사회적 지원으로 장애여성이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지원하라.

3-3. 장애여성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 여성의 주체적인 독립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생활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이동권에 있어, 특히 장애여성에게는 다양한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 시선폭력에서부터 안전한 진정한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4. 100인이상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을 5%로 확대하고 50%를 장애여성에게 할당하라!

장애인의무고용율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 2%의무고용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장애여성에 대한 할당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은 장애여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일자리를 획득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인식은 사실 차별을 방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고용창출과 차별철폐를 위해 100인 이상 기업체에 장애인 의무고용율 5% 확대실시를 요구하며, 그중 50%를 장애여성에 할당할 것을 요구한다.

5. 장애여성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장애인 여성은 장애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적고, 교육기회가 박탈되다 보니 취업의 기회조차 없으며 이로 인해 우리사회의 빈곤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중고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학교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 특히, 대학특례입학에 있어서 장애여성 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학교 내 장애여성 휴게실과 장애여성화장실 등 각 장애여성의 필요에 맞는 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장애여성의 차별과 이어진다. 이를 없애기 위해 교과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장애여성을 무성적인 존재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성인지적 교과과정과 실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장애여성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6.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아니라 장애여성화장실을 설치하라!

장애인전용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장애여성을 무성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학교, 병원, 지하철역사를 비롯한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여성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인 정보접근권 확보 요구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의 정보접근의 분야는 정보통신기술환경과 의사소통환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환경이라 함은, 최근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장애라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장애인들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음. 이에 따른 정보 통신 기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소통환경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가 특히 심각한데, 시·청각 장애인은 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정보 접근의 과정에 차별받는 경우가 아주 심각함. 따라서 이들을 위한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해 이들의 정보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관련되어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의 소외 수준은 꽤 심각하다. 정보화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PC이용률은 비장애인의 6분의 1수준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활용 수준도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은 많은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 계층은 대부분 빈곤계층이므로,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해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의사소통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직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공공기관에 수화통역관을 배치한다든지, 점자책의 보급을 활성화한다든지의 노력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공공 도서관 등, 정보 활용의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 접근 환경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리고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 등 매체의 정보 접근 환경 조성에 대한 문제 역시, 일정 비율만을 수화 통역사를 배치한 방송을 내보내는 등, 전시행정으로만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구]

1. 정보화 기기 보급 확대 및 정보화 교육 환경 개선하라!

-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활용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 계층에 대한 저렴한 가격의 정보통신 기기 보급 또는 할인율의 적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화 기기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기존의 정보화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일선 정보화 교육 현장(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구민회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직업 훈련 기관)에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나아가 장애인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IT 훈련) 등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IT관련 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보화 기기의 접근성을 확대하라! (정보통신기기 접근도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 환경 마련)

- 정보통신기술이 날로 발전할수록, 그래픽인터페이스에 의한 웹사이트 구축 또는 비장애인 위주로 설계된 멀티미디어 기기 등이 확대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웹 환경에서 텍스트 중심으로 구축된 웹 환경에 익숙할 수밖에 없다. 정부 등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 환경을 조사 분석한 결과 100여곳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무려 54곳에서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웹사이트 상에 시, 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 제공을 확대, 보편화시키는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 또한 정보통신기기가 손가락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을 위주로 설계되었고, 노트북의 경

우 터치스크린 등이 대표적 예인데,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터치 스크린을 전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 역시, 음성합성프로그램(TTS)이 고가 또는 이용하기가 불편해 텍스트에 기반한 웹 환경이라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지체 장애인 등, 장애유형별에 따라 정보화 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 작업이 시급하다.

- 이러한 연구, 개발 작업은 미국의 경우에서 그러하듯,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소 설치 및 관련 산업의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접근성을 확대하라!

- 청각장애인을 위한 TV 자막, 수화방송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고, 특히, 최근 도입되고 있는 위성 및 디지털 방송에도 자막 및 수화방송 실시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 비율 역시 확대 실시해야 한다.

4. 정보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라!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이용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관련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 보급 확대, 청각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정보매체를 시각화시켜 활용할 수 있는 영상매체의 보급을 확대시켜야 한다.

5. 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라!

- 공공기관에 청각장애인들이 민원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사 등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경우 공공기관의 수화통역사 배치는 시범적 운영에 불과하므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모든 공공기관에서 수화통역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청각장애인들의 민원 처리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점자 안내판 등을 제공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민원 접수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 관련 자료 등이 점자화하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은 언제나 민원 처리 관련 담당자들의 구두 설명을 들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민원 처리 자료 또는 문서 등을 점자화하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민원 처리 도우미를 공공기관에 배치해야 한다.

장애인 문화권 확보 요구

[현황 및 문제제기]

지난 2000년 장애인문화욕구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중 28.7%가 문화활동의 경험이 있는 정도(영화6.8%, 스포츠4.8%, 전시·공연장8.2%등)로 나타났다. 반면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문화를 향유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함에도 71.3%가 자신의 문화생활로 TV이나 독서 등을 꿈을 정도로 집안에서 즐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소득이 없는 장애인일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시설의 미비와 편의시설 등의 문제로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며 다양한 문화생활 등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문화생활 또는 여가생활에 많은 욕구와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은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안에서 TV이나 독서 등으로 문화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문화정책이 미비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은 거리나 교통시설, 일반 건물에 있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있다.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으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입장은 고려한 시설이 아니라 이용함에 많은 불편함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문화를 배우고 즐기기에 어려움이 많아 장애인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애인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중장기 장애인문화정책을 수립하여 보다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요구]

1. 장애인 문화권리확대를 위한 “중장기 장애인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하라!

- 장애인의 문화욕구와 문화실태조사를 통해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문화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시혜적 성격의 소극적 보호·복지정책을 넘어 장애인의 문화권리에 기반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 관련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장애인과 관련하여 문화시설의 전문성, 체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문화권리가 사회적으로 침해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관련 문화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체계 수립이 절실하다.
- 소수자문화권리지원과가 신설되어야 한다 : 장애인, 빈민, 이주노동자, 노인 등

2. 공공문화기반시설 개혁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을 보장하라!

- 장애인 관련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가 필요하다.
-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과 공공문화기반시설간의 적극적인 연계방안 추진하여 장애인의 문화수용력을 높이고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 공공문화기반시설내 장애인 관련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연구개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 까지도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장애인 관련 기준요건 강화 및 인센티브제 도입 : 장애인 문화활동 관련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
- 공공문화기반시설 관련 장애인의 사전 정보접근, 이동, 시설이용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3. “(가칭)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즉각 추진하라!

- 현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문화를 배우고 즐기기에 어려움이 많아 장애인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교 및 문화공간이 절실히다.
-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서 장애인의 보편적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음.
- 장애인의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거점 문화시설로서의 “(가칭)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 필요하며 장애인 문화 관련 각종시설로서의 허브기능의 역할.
- 장애인 관련 사회시설과 문화시설간의 연계방안 모색.
- 장애인 문화센터, 정보센터, 교류센터, 상담센터의 기능을 두루 갖춘 공간.
-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관련 종사자, 지역사회 문화시설 종사자들이 함께 어울려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공간.
- 장애인의 소외계층도 함께하는 저렴하고 건전한 문화교류의 장.
-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및 소모임. 단체들을 발굴하여 지원.
- 장애인문화정책의 실질적인 체계화, 전문화 모색하고 시설 및 지역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위해 설립 시급.

미신고시설생활자 인권확보 요구

[현황 및 문제제기]

지금 우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며,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예전에는 시설에 수용되어 지역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탈시설화, 정상화 이념이 장애운동의 기본 바탕이 된지 오래다. 하지만 아직도 시설에 수용되어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많고,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에 신고 되지 않은 미신고시설의 경우 그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그 문제 또한 심각하다. 우선은 아래의 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미신고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1> 미신고시설 시도별-시설종류별 현황

시도	계	노인	모자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시도별비율
총 합계	1074	474	14	35	134	389	21	5	2	100.0%
시설별 비율	100%	44.1%	1.3%	3.3%	12.5%	36.2%	1.9%	0.5%	0.2%	
서울	129	33	2	16	33	45				12.0%
부산	18	7		2	6	3				1.7%
대구	15	1			8	6				1.4%
인천	46	21	1	2	5	16	1			4.3%
광주	23	4			5	14				2.1%
대전	21	10	1		3	7				2.0%
울산	8	5			1	2				0.8%
경기	362	176	5	7	31	131	6	4	2	33.7%
강원	88	41		3	13	30	1			8.2%
충북	62	32			6	17	7			5.8%
충남	66	32			3	30	1			6.2%
전북	83	43	1	1	3	35				7.7%
전남	50	28			3	16	2	1		4.7%
경북	57	24	4	3	7	18	1			5.3%
경남	39	17			6	14	2			3.6%
제주	7			1	1	5				0.7%

- 이들 1,074개소 시설에는 모두 19,991명의 생활자들이 있고 종사자는 3,571명으로서, 시설당 18.6명의 생활자와 3.3명의 종사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표 2>와 <표 3> 참조).

<표 2> 미신고시설의 생활자 및 종사자 수

구분	총계	노인	모자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총생활자	19,991	8,777	149	890	1,767	7,093	1,128	97	90
수급자	9,193	3,693	14	264	1,033	3,923	163	39	64
종사자	3,571	1,649	43	97	357	1,265	109	18	33

<표 3> 미신고시설 규모별 현황

구분	총계	노인	모자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계	시설수	1,074	474	14	35	134	389	21	5
	생활자수	19,991	8,777	149	890	1,767	7,093	1,128	97
	평균생활자	18.6	18.5	10.6	25.4	13.2	18.2	53.7	45.0
10인 미만시설	시설수	370	160	9	11	63	123	2	1
	생활자수	2,226	925	51	74	383	761	16	7
10~30인 미만시설	시설수	546	237	3	16	63	216	8	3
	생활자수	9,337	4020	37	290	977	3,808	150	55
30인 이상시설	시설수	158	77	2	8	8	50	11	1
	생활자수	8,428	3832	61	526	407	2,524	962	35

또한 이들 1,074개의 시설 중 2003년도 5월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대책에 의거하여 조건부시설로 등록한 시설은 모두 928개소(86.4%)이며 순수한 미신고시설은 146개(13.6%)에 해당합니다. 조건부시설을 포함하여 미신고시설이 현재 '미신고' 상태로 있게 되는 이유는 정부의 양성화대책과 이후 보완된 시설 신고기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설치기준'과 '종사자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신고시설이 많고, 이에 대해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많다.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바다사건, 꽃동네 사건, 양지마을 사건 등의 시설비리 문제가 있었고, 크고 작은 시설에서의 화재사건, 참사사건, 참정권 침해사건, 성폭력 등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사건이 계속 있어 왔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생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미신고시설에 대하여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정책 또한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외면하는 정책이다. 작년 말부터 문제가 되었던 두 개의 미신고시설(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 집)과 같이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시설을 정부는 "조건부미신고시설 양성화지침"이라는 정책 아래 2005년부터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의 문제를 외면하고, 정부의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말로만 지역사회중심이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며, 탈시설화를 외치고 있을 뿐, 정부의 정책은 뚫릭 구멍만 야금야금 메꾸는 '눈 가리고 아옹' 하는식의 정책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침해가 방치되고 있던 시설의 문제를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다. 정부는 시설문제의 근원을 2만 여명의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요구]

1. 정부는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라!

- 인권침해가 있었던 시설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미신고시설을 민·관 합동으로 조사하여, 문제시설은 즉각 폐쇄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2. 생활교사 등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들을 위한 인권 메뉴얼을 개발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라!

3. 정부는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라!

- 지역사회의 II센터, 소규모 그룹홈 등을 활성화, 지원하며 수용시설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
-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시설개방을 요구하고, 시설운영의 투명화와 생활자들의 인권확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4 2 0

장애인 편의시설 요구

[현황 및 문제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일 편의시설에 대한 제2차 전수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 대상 877,257개 가운데, 665,293개가 설치되어 모두 75.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98년도의 조사 결과 47.4%보다 무려 28.4%가 높아진 결과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스스로 의원 등 중요 시설들이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시설들도 정확한 검사 없이 준 공검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듯이 실질적인 건축물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번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는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에만 의존한 조사결과이며, 실제로 장애인의 이용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수치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중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73.7%라고 밝혔으나 편의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49.4%에 불과 했으며, 종교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도 73%라고 밝혔으나 편의연대 조사 결과 2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부정확한 조사와 이로 인한 높은 설치율은 편의시설 설치를 저해할 것이며, 장애인의 건축물에 대한 접근 역시 저해할 것이며, 나아가 편의시설 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지난해에 수립된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편의시설에 대한 부정확하고 무책임한 조사와 무성의한 정책은 장애인의 건축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막으며 그 결과 장애인은 건축물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당하고 차별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요구]

이에 우리는 정부가 편의시설 정책을 바로 세워, 장애인의 건축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접근권에서의 차별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1. 편의시설 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라!

보건복지부는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설치율을 부풀렸으며,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마저 전혀 수립하지 않은 무성의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 및 수행 능력을 상실한 보건복지부가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을 보건복지부로 즉시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편의시설은 90% 이상의 건축 및 교통과 관련된 내용이며, 업무 내용과 주관 부서로 볼 때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는 것이 당연하다.

2.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을 공개하라!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의 수립, 사업의 집행, 법률의 개정 등을 모두 일부 법인 단체들에게만 공개하고 비공개로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자세는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의지와도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특정 단체에게만 이득을 준다는 의혹을 사게 한다. 일례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수립된 제2차 5개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던 “편의시설지원센터” 수립을 올해 초에 몇몇 단체와만 협의하여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지원센터 수립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몇몇 법인 및 특정단체와만 이를 진행하였다.

였다. 이러한 비공개적인 정책의 수립과 법령의 개정 등은 폭넓은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또한 관련 전문 단체의 의견도 외면함으로써 전 장애계의 의견을 거부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몇몇 법인 단체 및 특정단체 밀어주기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의 편협하고 폐쇄적인 편의시설 정책이 편의시설의 확충 개적으로 몇몇 특정단체와만 추진하는 편의시설 정책을 즉각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게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이다.

3.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편의증진법을 개정하면서 장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폐지하였으며, 편의시설 예산은 일반 회계에서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모 장애인단체에 설립함으로써 예산 수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와 확충을 위해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연구, 자체 및 시설주에 대한 지원, 기술 개발, 편의시설 운동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

[주요]

4 2 0

장애인 체육활동 확보 요구

[현황]

1) 정부의 장애인체육시설 지원현황과 비장애인체육시설 지원현황

<표 1> 장애인체육시설 현황 : 전국 13개 체육관지원

지역	시설형태	비장애인참가	운영주체	내용
대구	종합	불가	국제라이온스협회	탁구, 배드민턴, 보치아, 농구, 배구, 양궁, 론볼링
창원	종합	생활체육전반	사단법인	배드민턴, 보치아, 헬스, 수영
안동	종합	생활체육전반	사단법인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충북	체육	수영	사회복지법인	헬스, 농구, 트램플린, 보치아, 론볼링, 수영
광주	종합	수영, 탁구, 당구	사회복지법인	탁구, 당구, 재활치료, 수영
삼육	시설	불가	사회복지법인	실내체육
성재원	종합	청소년 가능	사회복지법인	농구, 배구, 배드민턴
대구	종합	전체가능	사회복지법인	탁구, 실내체육, 수영
홀트일산	종합	전체가능	사회복지법인	농구, 탁구, 배드민턴, 헬스
전북	종합	전체가능	사회복지법인	수영
정심	종합	전체가능	사회복지법인	헬스, 테니스, 수영
전남	시설	불가	재활협회	실내체육
시각장애인전용 축구장(서울)				축구

(2002년 장애인시설지원현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자료통계실의 2002년 장애인체육시설 지원 현황(표1)을 보면 전국 13개 체육시설에 국고 30%, 지방 50%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 13개 중에서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은 단 2곳으로 충북 곰두리체육관과 서울 송파구의 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 뿐이고 나머지 시설들은 종합 복지관내 체육관이나 장애인 시설 부설 체육관들이다. 장애인 시설 부설 체육관을 제외하고 종합복지관 내 체육관들은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고 장애인을 중심으로 비장애인이 참여하는 종목이 한정되는 체육관은 충북 곰두리체육관 뿐이다.

이에 비해 비 장애인 체육시설 지원 현황을 보면 체육관은 전국 163개 시 군에 1개소씩 설치되어 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체육 시설에 국고가 보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표 2> 비장애인체육시설 지원현황

시설명	목표	지원금액 지원기준	주요시설	
시군기본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163개 시·군 1개소 163개 시·군 1개소	· 국고, 지방비 각 50% · 국고, 지방비 각 50%	축구장, 육상트랙 등 구기가능 시설
동계체육시설 (실내빙상장)	전국 16개 시·도에 1개소(서울·경기는 2개소)	· 국고, 지방비 각 50%	피겨,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가능 시설	
전국체전 개최지역 미보유시설	전국체전 개최지역	· 국고, 지방비 각 50%		
생활체육공원	전국 232개 시·군·구에 1개소	· 개소당 10억원(2개년) · 국고, 지방비 각 50%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실 외수영장, 러스케이트장, 게이 트볼장, 체력단련장, 산책로, 휴게 실, 녹지공간 등	
국민체육센터	시·군·구 단위에 1개소 건립(올림픽생활관 등 건립지 제외)	· 개소당 30억원 · 공단기금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장, 수영 장 등 민간스포츠센터수준의 각 종 체육시설 등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군지역 및 도농통합형시 지역의 읍·면지역에 1개소(133개 지역)	· 개소당 15억원 · 마사회기금	다목적 체육관, 회의실, 체력단련 실, 스포츠·취미교실, 전시실, 청 소년실, 간이체육시설 등	
잔디·우레탄 운동장	331개소	· 개소당 3억원 · 공단기금 100%	운동장, 트랙 등	
게이트볼 전용경기장	16개 시·도에 1개소	· 개소당 5억원 · 국고, 지방비 각 50%	게이트볼전용구장, 1개소 10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전국 3,512개 읍·면· 동단위에 2~3개소씩 총 9,545개소	· 개소당 10~25백만원 · 기금, 지방비 각 50%	농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등 간이운동시설, 체육단련기구, 휴 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등	
동네운동장	2001년 완료	· 개소당 50백만원 · 공단기금 100%	잔디운동장, 우레탄시설	
길거리농구대	2000년 완료	· 1조(2대)당 120만원 · 공단기금 100%	농구대	

(2001년 12월 말 기준, 출처 2003 체육백서. 문화관광부)

[문제점]

1. 장애인 생활체육의 부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13개 장애인체육시설 중에 시설거주 장애인이 아닌 지역사회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7개 시설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치료의 효과가 공존하기 때문에 수영을 비롯한 실내스포츠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그 중에 수영이 가능한 곳은 5곳뿐이다.

2.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족

2003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143만명에 달한다. 등록되지 않고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 수를 제외하더라도 143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이 전국 13개 시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지원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국민을 상대로 스포츠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문화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는 비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비장애인 올림픽만을 지원하고 장애인 관련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복지진흥회에서 관리된다.

2004년 예산안을 보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1억 6천만원 지원, 복지진흥회, 36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올림픽대회에 12억 6천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지원하는 장애인올림픽은 지난해 언론에서 선수들의 열악한 생활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는 한국복지진흥회에서 올림픽을 지원해 왔었다. 그러나, 올림픽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선수들이 일상적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시설의 절대적인 부족과 장애인 전용체육관의 부재는 선수들의 성과를 특출한 개인의 노력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다.

[요구]

1. 장애인 생활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라!

- 장애인 체육관련 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전하라.
- 전국 광역시도 국·공립 수영장 1개소 이상에 장애인 교사와 안전요원을 배치하라.
- 시·도 생활체육교실 [스포츠교실]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라.
-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로 운영되는 생활체육강좌에 장애인 스포츠(론볼링, 보치아, 좌식배구, 탁구 등등)의 종목을 추가하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라.
- 체육예산의 10%를 장애인에게 사용하라.
- 장애인 생활 스포츠 동아리를 지원하라.
- 장애인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문화체육센터를 시·도에 건설하라.
- 근린공원에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하라.

2. 장애인 체육 선수단 지원을 활성화하라!

- 체육 선수단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3개 체육관에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외 시·공립 체육시설에 우선 사용권을 지정하라.
- 장애인 올림픽 대회 선수단 전용 체육시설을 2008년까지 건설하도록 하라.
- 국·공립 체육관의 장애인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확인하고 집행하도록 강제하라.
-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서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70%의 예산을 지원하라.

충청북도 지역요구안

- 충북장애인권연대 -

1. 중증장애인 위한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라!

장애인콜택시(리프트설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도내에서 장애인 이동을 보조하기 위한 차량은 자체장애인협회 도지부가 운영하는 17인승 버스와 15인승 봉고, 시지부가 운영하는 9인승봉고 한대가 전부다. 그 차량들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실제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수는 훨씬 적다.

도내 등록 장애인수만 4만800여명이다.(출처:충북재활정보센터 충북장애인복지기관편람. 2001)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다. 도로 사정이나 지역의 접근권을 고려해 '집에서 집으로' 이동을 보조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의식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나 장애인콜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점차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충북도 대세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장애인콜택시 50대를 시험적으로 운행하라.

▶ 택시요금의 50%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라.

2.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철저히 점검 하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6년째이며,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한 주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정비 시한이 경과한지 4년 째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과 시설이용, 정보접근 등에서 심각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 공공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상황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해서 적용 시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

▶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지방조례를 제정하라.

3. 여성장애인 전문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전문시설을 구비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라!

여성에게 모성권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할 권리이다. 장애가 있는 여성은 사회의 인식부족으로 엄마가 될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 임신을 했더라도 장애특성에 맞는 진료를 받지 못해 임신 기간 내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사회를 표방하는 현시점에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지원을 받아야 마땅한 기본적인 권리다.

▶ 전문산부인과 병원을 각 시군단위로 지정하고, 지정된 병원에는 수화통역사 등이 연계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유형별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구비하라.

▶ 여성장애인의 임신기능여부 검사와 임신 중 검사, 출산 수술비 등을 지원하라.

4. 장애아동 교육권을 확보하라!

▶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확충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라.

2003년 국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수학교 중등부의 경우 1학급당 교원 정원 1.48명으로 전국 평균 1학급당 교원 정원 2.0명이라는 평균치에 비해 낮다.

2004학년도 사립 특수학교 교원 정원 배정에 증원되지 않았다.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은 중등부 교육과정에서 실시한다. 교원 정원 부족은 장애학생들의 다양한 직업교육에 관한 교육권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2004년 2학기부터 교사증원 가능하도록 하라.

- 한 학급당 인원수를 유치원 5명, 초등 8명, 중·고등 12명으로 줄이고, 정서장애 아동은 5명으로 한 학급을 구성할 수 있게 하라.

▶ 학교 내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라.

장애인의 평균학력은 남성장애인의 경우 40%가, 여성장애인의 경우 70%가 초등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장애인이 점유하는 사회적인 위치가 열등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초

· 중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방과 후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아동에 대한 방과 후 교육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치료비와 함께 사교육비의 부담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더구나 맞벌이 부부일 경우 아동을 보호할 곳이 마땅치 않아 방과후 장애아동에게 일어나는 사고나 실종 등의 문제에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 학교 내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을 열어 전문교사 배치하고, 버스운행을 실시하라.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아동의 사회통합을 앞당길 수 있도록 사회교육을 실시하라.

5. 장애인 의무고용 2% 이행하라!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 해당 기업체 32개 가운데 이를 지키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1.23%로 대상기업체중 단한 명의 장애인도 취업시키지 않고 있는 업체도 2곳이나 된다. (2003년 민노당 도내 의무고용을 조사) 또한 80%의 장애인 실업률이 보여주듯이 장애인의 만성적인 실업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장애인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노동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경상남도 지역요구안

- 경남420공동실천단

1. 경상남도는 영·유아 및 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조례를 제정하라!

장애인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러 치료 교육은 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복지에도 교육에도 속하지 못한 체 그 중요성이 무시되고,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으며 장애 자녀를 보호해야하는 부모들의 정상적 인 사회생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치료교육'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장애 개선에 좀더 인 사회생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장애아동 회망적인 영·유아 및 아동시기에 접하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장애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은 매우 제한적인 인원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산시에서 제정을 앞두고 있는 영·유아 및 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조례는 경상남도 차원에서 제정됨으로써 매우 제한적인 장애아동의 보육 범위를 넓히고 장애 아동과 그 부모가 마음 놓고 장애 개선에 노력하고 장애자녀를 가진 고급 인력들의 사회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조례를 제정하라!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욕구는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도 여행과 문화행사를 즐기고 싶고, 맛난 음식을 즐기는 식도락가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 환경은 장애인들을 반기지 않는다. 장애인의 참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려면 모든 공간에의 접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급증하는 장애인과 높아져가는 장애인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신축건물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타 시·도에는 장애인 복지 또는 장애인복지를 포괄하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 경남에는 진해시에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현존하는 여러 기금조례들이 가진 장단점을 근거로 하여 보다 바람직하며 독특한 기금 조례를 창조해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경상남도는 전년도에 건의되어 미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 제정을 서둘러 장애인 복지 활성화를 이루고 사회 일반의 장애인 복지 참여를 도모하자.

4. 경상남도는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라!

경상남도에는 10만 장애인이 있고, 장애영역은 다양해지고 발생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인구수와 장애인 수를 비교하여 우리지역보다 적은 장애인구를 가진 부산시에는 총9명의 인력이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과 경기도에는 장애인 복지과가 설치되어 있다. 4명의 인력으로 10만 장애인의 욕구를 수렴하고 충족 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사명감 투철한 공직자가 양질의 복지행정을 제공하고자 해도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양 없는 질은 결코 있을 수 없다. 10만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려면 우선 인력을 확보해야 현실적이며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경상남도는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신설하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방정부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잔존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하며, 장애 정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사회 문명의 발달과 함께 증폭, 증가되는 다양한 장애인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며,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연구할 위원회 구성을 변화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를 이를 수 있도록 해야겠다.

6. 경상남도 의회는 장애인특위를 구성하라!

의회에는 여러 특위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 특위는 없다. 10만을 넘어서고 있는 장애인들이 특별하거나 특정한 집단으로서가 아닌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제도화, 법제화 하여 장애인복지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경남도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한시적인 활동을 한다면 경남의 장애인복지 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 중심의 튼튼한 장애인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7. 여성장애인 전문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전문시설을 구비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라!

중증 여성장애인의 경우, 자신이 임신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도 제대로 산부인과 병원진료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임신을 하여 병원을 가도 각 장애유형에 따라 제대로 진료받기란 너무나 힘겨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운영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전문산부인과 병원을 각 시군 단위로 지정하고, 지정된 병원에는 각 장애유형별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담당전문의를 배치하라.

여성장애인의 임신가능여부 검사와 임신 중 검사 및 출산수술비 등을 지원하라.

8.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라!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꼭 확보되어야 할 요구이다. 현재 도내에서 몇 대 되지 않는 훨 체어 택시가 모 장애인단체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보니 야간운행이나 주말운행, 도내 타 시로의 운행 등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는 운영체계가 낳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이므로 빠른 시정을 요구한다.

우리는 주무관청이 관리를 맡는 저상버스를 운영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도내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주무관청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의 운행을 요구한다.
- 기본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연중무휴 운행방식 도입을 요구한다.
- 요금제는 일반버스요금의 40%정도만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여 가계부담이 적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요구한다.

9. 의무 고용 공무원 1%를 여성장애인에게 할당하라!

여성장애인은 장애인 속에 또 다른 소외된 계층 일 것이다. 여성 장애인 고용창출과 여성장애인의 사회와의 통합과 tkaf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무고용공무원1%를 여성장애인에게 배정을 요구한다.

1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를 실시하라!

중증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비장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동안 자원봉사의 관점에서 시혜와 동정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하였다. 활동보조 도우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이 집안에서만 아닌 사회 속에서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중증장애인의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4 2 0

부산지역 요구안

- 부산장애인인권연대

1. 이동권 - 장애인 콜택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협의회'를 추진하라!

2002년 12월말 현재 부산의 등록 장애인은 92,000여명으로 이동과 보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받는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은 61,000여 명이다. 이 중에서 1급 장애인은 5,000 여명, 2급 장애인은 9,000여명에 달하며, 여기에 시각 장애인까지 합친다면 이동약자는 25,000여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은 리프트 차량 6-7대 말고는 전무한 사정이다. 저상버스가 한 대 있다고나 하나 유명무실한 이미 오래된 바고, 설령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다닌다고 해도 집에서 나오기조차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외출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중증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는 하루 빨리 도입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협의회'를 설치해야 함을 부산시에 요구한다.

2. 자립권 -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산 지역 자립생활센터를 설치 및 지원하라!

장애인의 삶은 행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였고, 의료적으로는 재활해야 할 환자였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시혜와 동정으로 연명해야 할 빈곤한 약자였다. 그러므로 평생을 안방에서, 생활시설에서, 복지관과 재활시설과 병원 등을 전전하며 살아갔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지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부산시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3. 노동권 -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실성 있게 보장하라!

최근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 고갈위기가 닥쳐오자 방편으로 고용장려금 축소를 선택하였다. 기금의 고갈원인은 공단의 방만한 기금관리, 산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장려금지원 확대 등이라 볼 수 있겠다. 고용장려금이 삭감되면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중증장애인과 그들을 고용하는 영세작업장에 적지 않는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경증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기업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처럼 장애인 노동권의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기금 고갈 사태를 앞에 둔 만큼 부산시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어찌 보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획이 절실했던 시점이다. 하기에 우리는 부산시에 장애인의 노동권에 있어 필수적인 고용장려금이 안정되고 현실성 있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요구한다.

4 2 0

광주지역 요구안

- 광주장애인인권연대

* 대(對) '광주광역시청' 공동요구안

1. 광주광역시는 '저상시내버스'를 전면 도입하라!

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보편화된 저상버스는, 버스 밀바닥이 매우 낮게 설계되어 마치 길에서 걷는 듯 탈 수 있고,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램프 시설이 장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상버스가 생산은 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인하여 인해 시내버스로는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여 지난 2003년 우리 '광주전남 장애인 인권연대'의 전신인 '광주전남지역 장애인차별철폐 공동실천단'은 광주광역시에 '저상시내버스'의 연차적인 전면도입을 요구했었고, 그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저상버스도입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이 나오고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시당국은 불과 십여 일 전에 '관의 입맛에 맞는 경증장애인'들만을 참석시킨 체로 소리 소문 없이 '저상버스도입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 당국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광주광역시 당국의 정책적 관점이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의 이용에 있어서 최대 약자인 중증장애인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물적으로 '저상버스도입을 추진' 하려고 하기보다는, 관의 입맛에 맞는 몇몇 경증장애인들을 내세워서 구색 갖추기와 명분 쌓기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독한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광주·전남 장애인 인권연대'가 추천하는 '중증장애인'을 '광주광역시 저상버스도입추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시킬 것과 '저상버스도입추진협의회'의 회의 내용을 일점일획도 빠짐없이 장애·비장애 시민에게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 광주광역시는 '장애인용콜택시'를 전면 도입하라!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2002년 12월부터 '장애인용콜택시' 100대가 시범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100대가 추가 도입 될 예정이며 400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여 우리 '광주·전남 장애인 인권연대'의 전신인 '광주·전남지역 장애인차별철폐 공동실천단'에서는 서울지역의 등록 장애인 수에 대비되는 광주지역의 등록 장애인 수에 견주어 광주광역시 당국에 23대 내외의 '장애인용콜택시'의 시범도입을 요구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당국은 인권이나 문화적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기준에 의거하는 현실만을 평계로 하여 마치 어린아이들 소꿉장난과도 같은 숫자인 2~3대의 장애인용콜택시의 도입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 후 1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인권이나 문화적 가치를 전면 부정하고, 마치 어린아이들 소꿉장난과도 같은 이러한 약속마저도 허위에 가득한 약속이었음이 확인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광주·전남 장애인 인권연대'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광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택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단도직입적이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당국은 모든 1차로 25 대 내외의 '장애인용콜택시'를 2004년 상반기 중으로 즉각 시범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대 정도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장기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3. 광주광역시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IL센터지원과 '활동보조인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은
한 사람의 당당한 독립적인 인간이기를 원한다!

1) 현황

IL(Independent Living)이란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일지라도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현실은 IL(Independent Living)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 일 뿐으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 이동, 주거, 문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첫째로 사회복지단체(복지관포함)에서의 장애인복지는 대부분 전문가의 일방적 프로그램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인은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시설에 수용되거나, 장애인들의 욕구와는 동떨어진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의 혜택이 주어지는 전달체계가 복잡하여 중간 전달과정에서 인건비나 관리비로 새어나가는 부분이 더 많아, 이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둘째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의 문제이다. 중증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우리사회 현실에서 장애인의 활동보조는 대부분 장애인 가족과 일부 자원활동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움에 대한 결정권이 장애인당사자가 아닌 가족과 자원활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보조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로 전동휠체어는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활동보조기구로 기존의 수동휠체어에 의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던 이동에 대한 욕구를 전동휠체어의 지원으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해소하게 함으로써 자기결정과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는 전반적인 저소득층인 장애인들에게 고가의 활동보조기기라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구입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넷째로 주택의 개조의 문제다. 장애 종류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주택개조 방법, 환경 또한 다양하다.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주택환경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장애인들의 실내에서의 활동범위를 최대한 늘려줄 수 있도록 주택공간에 대한 개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2) 문제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애인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반 조건에 대한 법제화 등이 될 것이다.

먼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 구조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전문가들에 대한 수동성,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삶을 책임지며,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활동보조의 경우, 아무리 편의시설이 완벽히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장애특성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IL에 있어서 활동보조인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당사자 중심이 아닌, 부모와 가족의 케어, 도우미, 자원봉사로부터 시혜와

동정의 차원에서 보호와 봉사를 받기 때문에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동휠체어는 장애인들에게 편의용품이 아닌 필요용품이다. 따라서 이의 확보에 대해 정부나 자체의 어떠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장애인들의 주택을 개개인의 장애특성에 맞게 개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들어가는 비용도 장애라는 비 선택적 요소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부담되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우리의 요구]

1) 활동보조(유료)서비스를 제도화하라!

활동보조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일방적 도움의 자원봉사자가 아닌 계약관계를 통한 유료 활동보조인 차원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활동보조지원 예산은 정부 예산으로 책정하여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한 활동보조인에게는 4대 보험 적용 등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그 권리를 보장한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료활동보조인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활용, 파견 등은 IL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2) 광주지역 IL센터 건립을 지원하라!

광주지역에서 자조적으로 생겨나는 IL센터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을 최소화하여 장애인당사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한편, 장애인들이 센터에서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상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노동자로 인정받아 지역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지원에 대한 근거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전달체계로서 IL센터를 제도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3) 전동휠체어 무상지원 및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하라!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5년마다 무상지급하고, 이에 대한 개조나 수리, 추가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의료보험의 적용을 확대한다. 이는 전동휠체어가 활동보조기기로 의료용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對) '광주광역시 교육청' 공동요구안

1. 영·유아기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을 전면 보장하라!

장애인에게 있어서 장애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소지가 가장 높은 시기는 영·유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국민들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해줘야 할 책임을 방기한 채로, 장애 영·유아의 장애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사교육시장에 방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국 장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생계의 곤란까지도 감수하면서 장애 영·유아의 교육·훈련을 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분명 국민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책임 방기라고 할 것이다. 하면 이러한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훈련을 사교육시장에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2.17사교육비경감방안'의 기본 취지와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우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장애 영·유아들이 교육·훈련을 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비학령기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을 전면 보장하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만20세 이상의 장애인 중 초등학교 교육을 필한 장애인의 비율이 50% 내외라는 보고가 있었다. 이와 같이 공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비학령기 장애인들은 결국 평생실업이나 또는 단순·비숙련 노동에만 복무하게 되어 구조적으로 사회의 최 하층민으로서의 생활만을 강요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 그 누구나 누리는 다양한 권리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국민의 평생교육권 보장 및 국민 의무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비학령기 장애인에 대해 국민 의무교육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4 2 0

김도현 동지 석방 요구안

1. 김도현 동지 구속 배경

지난 2003년 5월 28일 “발산역 및 송내역 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해 책임인정 및 공개사과 촉구” 요구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이광섭씨(31세, 지체장애 1급)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철로를 점거했다. 이 투쟁에 비장애인 김도현 동지는 홀로 철로를 내려가지 못하는 이광섭씨에게 단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가담했다가, 검찰에 의해 지난 8월 20일 구속되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분노에 의해 기획된 이날 지하철 철로 점거 투쟁에 대해 검찰은 투쟁의 주체인 이광섭씨를 구속하지 않고, 시위에 단순 가담한 김도현 동지를 구속하는 편파 수사로 일관했다. 특히 김도현 동지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시위를 하는데 왜 장애인들을 대동하고 나왔느냐?”, “장애인들을 이용해 장애인 문제와 관련 없는 다른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등,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투쟁하는 장애인 주체들을 철저히 대상화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시켜 버렸다. 이는 검찰이 장애인들의 정당한 투쟁을 시혜와 동정의 이데올로기로 덧씌워 장애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구속된 김도현 동지의 석방을 촉구하고 장애인 주체들의 정당한 권리 확보 투쟁에 대한 인정을 보장받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검찰 측에 문제제기를 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급기야 김도현 동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어이없는 작태를 서슴치 않았고, 결국 재판부로 하여금 징역 8개월의 선고를 받도록 추동했다.

이미 사법부 역시 장애인들의 정당한 이동권 확보 투쟁에 대해 부정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사법부는 지난 11월 한진구 등 중증장애인 9명이 서울시 등을 피고로 제출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의 권리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으며,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구현해 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2. 김도현 동지 석방하라!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검찰이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로 김도현 동지를 구속시킨 것과 사법부가 장애인의 열악한 이동의 문제를 권리 침해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 현 정부의 기만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개 영역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차별 해결 요구를, 정권을 유지하는데 걸림돌로만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차별받고 있는 이 땅의 열악한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된 김도현 동지의 석방과 소극적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 정책을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 소개

장애인의 날은 시혜와 동정의 날!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최소한 마치 장애인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아니 아주 특별하게 대접받는 날이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평소에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공원이나 놀이동산에 데려가 마치 장애인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것처럼 지배자들은 호들갑을 떨어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평소 무관심했던 장애인의 인권을 다루는가 하면, ARS 성금모금을 하며 불쌍한 장애인을 돋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1년 365일 장애인들은 온갖 차별과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특별한 행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구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날 하루의 행사로 자신들의 행위에 면죄부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진 1. 2003년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축제) 사진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씌워주고, 사랑과 봉사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를 강화시키는 장애인의 날 모든 행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장애인의 인간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공동투쟁 기획단을 제안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들이 대상화되는 행사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알려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투쟁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합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은 3월 26일부터 4월 20일 까지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를 철폐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투쟁을 진행합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은

공동기획단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당당한 이 사회의 역사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장애 인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전개하고자 구성된 장애, 시민, 사회, 학생 단체들의 연대 조직입니다. 공동기획단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주간을 중심으로 장애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이 세상의 모순을 폭로하고 선전해 내며, 진보적 장애 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만들어내며 올해 '장애인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관변단체의 활동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의 날로 만들 것입니다.



사진 2. 2003년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의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행사

■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 조직 구성 현황(4월 12일 현재)

[참가단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고려대 장애인권위원회, 관악사회복지,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의 소리, 노동장애인야간학교, 노래공장,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다큐인, 단국대 '반디불',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고려대의료원지부, 민주버스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중그룹 '젠', 민중복지연대, 민중의료연합, 범국민교육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연대, 사회당, 사회당 학생위원회(준), 사회친보연대, 새삶여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서울시장애인클릭시티올바른운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DPI, 안산노동인권센터, 에바다복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자립생활지원센터 '프랜드케어',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의 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연금법제정 공동대책위원회,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 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특수교육교사학부회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정태수 열사추모사업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각장애인 인권센터, 최옥란 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독립생활 공동체 '어우러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IL단체협의회,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행동하는 의사회 '나눔과 열린', WILL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단체] 경남420공동실천단, 광주전남장애인인권연대, 대구DPI, 부산장애인인권연대(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청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충북지부,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사회당충북도위원회(준), 민주노총 충북지부, 굴령쇠, 장&비, 학생단위)

[후원단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장애인신문, 워드뉴스

[공동대표] 권영길(민주노동당), 김대성(정태수 열사추모사업회), 박영희(장애여성공감), 송형범(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신석준(사회당), 임세환(사회당 학생위원회), 원영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흥주(장애인연금법제정 공동대책위원회), 윤두선(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최숙(장애인교육권연대), 황상익(전국교수노동조합), 김용수(천주교인권위원회), 이경우(원불교인권위원회), 이선희(민주노동당 종로구위원장), 이수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경호(전국학생연대회의)

[장애인차별철폐 1000인 선언단]

강곤, 강동진, 강민우, 강병로, 강병완, 강봉실, 강성란, 강수정, 강정훈, 강태욱, 강현정, 강홍구, 강희석, 고명, 고명선, 고명숙, 고은광순, 고정숙, 고제현, 고희라, 고희숙, 공태운, 곽노총, 곽민숙, 곽종기, 곽종기, 구연창, 구정환, 구현우, 권규완, 권성희, 권순성, 권요안, 권재수, 권철길경희, 김경모, 김경숙, 김경숙, 김경화, 김경환, 김광오, 김광표, 김기연, 김기룡, 김기린, 김나연, 김난희, 김대환, 김덕윤, 김덕홍, 김동명, 김동선, 김명학, 김미경, 김미선, 김미숙, 김미연, 김미현, 김민경, 김민경, 김민수, 김민정, 김병규, 김병호, 김상도, 김상희, 김선영, 김선영, 김선옥, 김선옥, 김선희, 김성훈, 김세균, 김숙이, 김승수, 김양숙, 김연옥, 김영국, 김영규, 김영남, 김영일, 김영주, 김영희, 김예림, 김완, 김용주, 김용찬, 김윤태, 김은미, 김은순, 김은애, 김은채, 김은형, 김장일, 김재원김재철, 김재홍, 김정, 김정민, 김정신, 김정복, 김정열, 김정임, 김정하, 김종숙, 김종진, 김종필, 김종한, 김주현, 김지영, 김지혜, 김지현, 김진만, 김진우, 김진철, 김진희, 김철식, 김태동, 김태선, 김현식, 김현주, 김형진, 김혜성, 김혜영, 김호철, 나해니, 남병준, 남병태, 노경수, 노영호, 노진호, 도경만, 류경원, 류현진, 명석의, 목미정, 목영권, 문명동, 문세정, 문영록, 문창배, 문현웅, 미류, 민길숙, 민영진, 민점식, 박건영, 박경석, 박경양, 박나원, 박대운, 박동렬, 박만용, 박미자, 박병희, 박선영, 박성준, 박수미, 박수인, 박숙경, 박승병, 박애경, 박영민, 박영희, 박옥순, 박용국, 박용수, 박이용준, 박인호, 박정은, 박정희, 박정호, 박정희, 박종삼, 박종필, 박주희, 박진희, 박진석, 박진희, 박진희, 박진호, 박태승, 박태훈, 박한일, 박향근, 박혜원, 박현, 박현주, 박호순, 박홍규, 방에심, 방은미, 배복주, 배장훈, 배진주, 백기철, 백미화, 백민영, 백승숙, 백승환, 백연희, 백정균, 백정훈, 백종환, 백성호, 사성근, 서원영, 선용진, 성원규, 손지희, 손충모, 손효정, 송경준, 송미옥, 송병준, 송환웅, 송호정, 승인, 신동환, 신만수, 신승식, 신연실, 신연주, 신윤칠, 신현숙, 신준형, 아자, 안민희, 안성현, 안신일, 안옥수, 안인선, 양문화, 양영희, 양재철, 엄종용, 어미현, 염계정, 오명수, 오석균, 오성우, 오영호, 우철영, 유문화, 유근중, 유기용, 유동걸, 유민종, 유미정, 유승준, 유원근, 유원섭, 유인숙, 유재수, 유정윤, 유현석, 윤기현, 윤석용, 윤성훈, 윤수정, 윤숙자, 윤신원, 윤영훈, 윤장원, 윤지영, 윤혜정, 은국, 은대성, 이강훈, 이경호, 이경희, 이광세, 이난희, 이동기, 이동원, 이동현, 이동환, 이문화, 이문화, 이미정, 이민숙, 이민우, 이상윤, 이상재, 이상화, 이상훈, 이상희, 이선경, 이선연, 이선주, 이세백, 이수, 이수정, 이승민, 이승연, 이승현, 이시온, 이알찬, 이연수, 이영교, 이영주, 이옥순, 이우택, 이원재, 이유미, 이윤소, 이은아, 이은주, 이은진, 이장원, 이재필, 이점도, 이정영, 이종각, 이준현, 이지웅, 이지은, 이지은, 이지현, 이지희, 이진, 이창길, 이창수, 이철호, 이학로, 이해나, 이현, 이혜연, 이화자, 이활연, 이홍호, 이희범, 이희연, 임상미, 임세환, 임순옥, 임영화, 임은영, 임지희, 임춘만, 장두만, 장성일, 장시정, 장진혁, 장혜영, 장혜옥, 전마린, 전민숙, 전병욱, 전연옥, 전윤우, 전종욱, 전판기, 정경자, 정광서, 정근혁, 정동은, 정동현, 정민숙, 정재우, 정재욱, 정지영, 정지현, 정진오, 정진태, 정창우, 정창현, 정태익, 정평, 조윤, 조경애, 조동원, 조동진, 조미선, 조병찬, 조복인, 조성남, 조세광, 조소영, 조숙자, 조영권, 조영욱, 조영임, 조원옹, 조은일, 조항직, 조현민, 조희도, 조희주, 좌동엽, 좌미경, 진경, 진영, 진영옥, 진옥경, 채종걸, 천보선, 최경한, 최광은, 최귀선, 최금자, 최대영, 최명진, 최미은, 최배근, 최병진, 최상건, 최선, 최성진, 최성호, 최수지, 최용기, 최정민, 최정애, 최정원, 최정은, 최종두, 최진영, 최희리, 추경미, 추명길, 케이, 타리, 탁원경, 하명수, 하승훈, 하인호, 하정구, 하주화, 한도영, 한영선, 한정민, 한혜선, 한순자, 허경, 허서현, 허성현, 허진태, 허효남, 현원일, 현호현, 혜리, 흥경자, 흥미경, 흥봉석, 흥상민, 흥성정, 흥어준민, 흥연실, 흥윤하, 흥은전, 흥진표, 흥진수, 화소영, 황상진, 황아리영, 황은주, 그 외 전교조 10인, 국제민주연대 5인 (이상 496명)